

- 보조금 지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특정감사 결과보고

감사 결과

- ▶ 연 2억 원 이상 보조금 지원 시설(단체)에 대해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그 사각지대인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 ▶ 이번 특정감사는 보조금 지원 기준 적법성,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의 합리성 및 적법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감사결과 총 6건의 부적정(또는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상 조치(시정 2건, 주의 4건), 재정상 조치(회수 315,600원)를 처분 요구하고자 함.

I 감사개요

1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자체감사의 종류)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4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체감사규칙」 제5조 (감사의 종류 및 실시 주기)
- 2017년 감사 종합계획 [감사실-8116 (2016. 12. 30.)]

2 감사대상기관 및 범위

- 감 사 반 : 감사담당 등 4명

3 증점감사 사항

분야	감사사항
지원방침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 예산 편성 -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배제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 지원 필요성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 축소·폐지 -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 5년 범위 내 보조금 교부 제한
지방보조금 지원절차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신청 및 접수 - 지방보조사업 자체 심의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 실적보고, 정산보고 및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
단체별 사업추진 (예산회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여부 - 자부담 반영 및 집행 - 전년도 정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개선 등 - 예산·회계 처리의 적법성, 합리성, 투명성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사업변경 여부 -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자치부) 준수 여부 등

II 단체별 주요사업 및 예산현황

총무과

단체명	사업명	사업시기	예산액(천원)
총 9개 단체 / 28개 사업			116,637
△△△ &*%%	계 (7개, 운영비 포함)		51,433
	@@# \$ 지원 육성 및 ** 영비(법정운영비)	매월	10,000
	건강백세 어르신 효도잔치	2016. 6 ~ 7월	2,760

단체명	사업명	사업시기	예산액(천원)
△△△ &*%%	소외계층 계절김치 담아주기	연중(총 3회)	7,350
	***방역안전지킴이 활동	2016. 6 ~ 10월	1,560
	무의탁 노인 섬기기, 소년소녀가장 돌보기(동 보조사업)	동 지원금 분기별 배분	22,000
	2016년 ***** 중앙위탁교육	연중(10개 과정)	3,768
	제6회 ***** 날 기념 연찬회	2016. 4월	3,995
^^&@@@%^& △△△&*%&	계 (5개, 운영비 포함)		21,703
	사무국 운영비(법정운영비)	매월	10,000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우리고장나무심기	2016. 4월	4,878
	### 바르게 세우기 문화행사 및 장학금 전달	2016. 10월	1,025
	기초 법질서 및 안전문화 캠페인	연 2회(2016. 6월, 9월)	1,450
	이웃사랑 지역사랑 김치나누기	2016. 11월	4,350
***** **△△△**	계 (5개, 운영비 포함)		17,030
	**운영 및 조직활동경비(법정운영비)	매월	10,000
	6·25전쟁 음식재현 시식회 및 전시회	2016. 6월	1,000
	나라사랑 연수사랑 태극기 달기운동	제헌절, 광복절	2,250
	아동안전지킴이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900
	전방안보교육 및 통일 대비 민주시민교육	2016. 10월	1,880
□□□□□ ○○○○△△△**	계 (1개)		1,900
	중·고등학생 안보통일교육	2016. 4 ~ 12월	1,900
***** **△△△&*%&	계 (2개)		7,045
	새터민과 함께하는 추석음식 만들기	2016. 9월	1,375
	제4회 △△△ 통일합창대회	2016. 10월	5,670
사)&*%%!! △△△&*%&	계 (2개)		7,415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2016. 4 ~ 12월	3,800
	교통질서캠페인 및 지역청결운동	2016. 4 ~ 12월	3,615
##### @!&*%&	계 (3개)		4,947
	환경정화활동 및 환경보호캠페인	2016. 4 ~ 12월	1,509
	생태교육	2016. 4 ~ 12월	2,088
	로드카페	2016. 4 ~ 12월	1,350
□□□□△△△^^ &*^\$	계 (1개)		1,990
	평화한마당	2016. 9월	1,990
△△△ @#\$%^&	계 (2개)		2,904
	SAFE 연수 만들기 결의대회 및 실천캠페인	2016. 4 ~ 12월	590
	야간방범순찰 및 ### 선도	2016. 4 ~ 12월	2,314

□ 교육지원과

단체명	사업명	사업시기	예산액(천원)
총 2개 단체 / 2개 사업			6,160
□□□□△△△△	보석을 찾아라	2016.4.30.~6.25.	2,610
▲▲▲▲▲▲▲▲ ▲▲▲▲▲▲▲▲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	2016.6.9.~11.9.	3,550

□ 노인장애인과

단체명	사업명	사업시기	예산액(천원)
총 4개 단체 / 12개 사업			58,837
#@!@#\$%협회 △△△**	계 (7개, 운영비 포함)		48,797
	운영비	연중	13,200
	지체장애인축제한마당및자활증진대회	16년 5월	6,000
	중증장애인야외체험지원사업	16년 6월	2,924
	인천광역시장애인게이트볼대회	16년 10월	600
	전국장애인의날기념전국지체장애인대회	16년 10월	1,550
	장애인보장구무료수리센터	연중	20,923
	장애인무료교통봉사사업	연중	3,600
△△△△△△△△협회 △△△**	계 (3개)		5,620
	기초교통질서지킴이캠페인전개	연중	750
	장애인문화누리기	16년 5월	3,190
	장애인차량이동봉사운영사업	연중	1,680
&^%*%^% △△△**	계 (1개)		2,000
	수화통역사양성과정	16년 4월~11월	2,000
^^\$#@!! !@#△△△△△△△△	계 (1개)		2,420
	장애인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강사교육 및 우수업체견학	16년 4월~10월	2,420

가정정책과

단체명	사업명	사업시기	예산액(천원)
총 5개 단체 / 6개 사업			16,634
◆◆◆◆◆◆◆◆	계 (2개)		10,802
	행복한 가정만들기 세상사는 이야기 쇼	2016. 12. 13.(화)	3,550
	무의탁 어르신 합동고회연	2016. 11. 7.(월)	7,250
★★★★★	모범### 장학금지급 및 ★★★★★ 축제한마당	2016. 11. 26	2,000
#####※※※ ○○	### 소셜프로젝트	2016. 5. ~ 12.	1,250
\$\$#!#%○○○○○○○ ○○○○○	###선도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캠페인 사업	2016. 5. ~ 10.	1,500
▲▲▲▲▲▲▲▲▲▲▲▲▲▲ ▲▲▲▲	### 유해환경 감시 및 순찰활동	2016. 4. ~ 12.	1,084

환경보전과

단체명	사업명	사업시기	예산액(천원)
\$\$#!#%#@#\$\$%^& ○○○○○○○○○○ 인천△△△**	환경감시 활동 및 순찰	2016. 4 ~ 11월	2,064

교통행정과

단체명	사업명	사업시기	예산액(천원)
(##%^!@\$%^	주요교차로 교통보조근무, 거리 캠페인, 우측보행캠페인, 관내 행사 교통 통제 등	2016.4월~12월	11,337

1 총 평

- ▶ 연 2억 원 이상 보조금 지원 시설(단체)에 대해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그 사각지대인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 ▶ 이번 특정감사는 보조금 지원 기준 적법성,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의 합리성 및 적법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감사결과 총 6건의 부적정(또는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상 조치(시정 2건, 주의 4건), 재정상 조치(회수 315,600원)를 처분 요구하고자 한다.
- ▶ 2015년까지는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하여 운영되어 오던 지방보조금(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하고 있다.
- ▶ 그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토록 한 결과 부당한 보조금 운영 사례가 빈발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보조금 관리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명확화하고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제정되었다.
- ▶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등 지방보조금에 관한 관리 기준이 체계화 되어 있어 각 부서별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대체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었다.

- ▶ 그러나, 지방보조사업비에 자부담이 포함된 경우 보조금 교부에 따른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례가 많았으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 함에도 자부담 집행 시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등 자부담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또한,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 등 3개 단체에서는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관련부서인 총무과와 가정정책과는 정산검사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정산 검사 및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 ▶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

2 지적사항 목록

□ 지적사항별 현황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요구		비 고
		행정상	재정상(원)	
	총 6건 (주의 4건, 시정 2건 / 회수 315,600원)		315,600	
1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금 예치 등 확인 소홀 ㉠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금 예치 통장 미확인 (총무과, 교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가정정책과, 교통행정과)	주의		
2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미사용 ㉠ 보조금 교부 전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 미확인 ㉡ 간이영수증 첨부하여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발행 노력 (교육지원과 1건, 가정정책과 4건)	시정		(세금) 계산서 발행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요구		비 고
		행정상	재정상(원)	
3	보조금 교부결정 용도 외 집행 ㉠ ○○○○○○○○ : 주류구입(45,600원) ㉠ ***** : 등유구입(30,000원) ㉠ ※※※※※※※※※※ : 주유비(240,000원)	시정	회수 315,600원	
4	물품 구입 시 개인포인트 적립 ㉠ △△△△△△△△(3건, 1,486점) ㉠ □□□□□□□□(6건, 664점)	주의		
5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소홀 ㉠ 체크카드 미사용 및 세금계산서 누락 ㉠ 자부담 전용 통장 미개설에 따른 자부담 집행내역 정산 부정확 (총무과, 가정정책과)	주의		
6	보조금 정산 검사 및 지도감독 소홀 ㉠ 정산검사 시 실적보고서에 따른 자부담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이 부정확하고 체크카드 미사용 및 증빙자료 누락 등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총무과, 가정정책과)	주의		

□ 부서별 현황

부서명	지적사항	처분요구	비고
총 무 과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금 예치 등 소홀	주의	
	보조금 교부결정 용도 외 집행	시정	회수 75,600원
	물품 구입 시 개인포인트 적립	주의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소홀	주의	
	보조금 정산 검사 및 지도감독 소홀	주의	
교 육 지 원 과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금 예치 등 소홀	주의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미사용	시정	세금계산서 발행
노인장애인과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금 예치 등 소홀	주의	
가정 정책 과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금 예치 등 소홀	주의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미사용	시정	(세금)계산서 발행
	보조금 교부결정 용도 외 집행	시정	회수 240,000원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소홀	주의	
	보조금 정산 검사 및 지도감독 소홀	주의	
교 통 행 정 과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금 예치 등 소홀	주의	

※ 환경보전과 : ***** ^^^^\$\$# && △△△** 지적사항 없음.

IV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1.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금 예치 등 확인 소홀

【 총무과, 교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가정정책과, 교통행정과 】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여야 하며 다만, 단체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 통장과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각각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르면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조기집행을 제고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2016. 6. 30일까지는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교부할 수 있다. 더불어,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자(기관·단체·개인)별 보조금 교부총액 광역은 3,000만원 미만, 기초는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조금 교부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 그러나, 총무과 등 5개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표]와 같이 자부담금이 예치되기 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조기집행을 제고를 위해 사업시기가 미도래한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금 예치 여부와 관련 없이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에도 사업시기 도래 시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에도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또한, ○○○○○○○○ 등 3개¹⁾ 단체에서는 보조사업에 따른 자부담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비통장과 혼용하여 자부담 정산을 명확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금 예치 미확인 현황

부서명	단체명	지적사항	비고
총무과	○○○ ○○○○	○ 보조금 교부에 따른 자부담 확보 여부 미확인 - 사업기간 : 연중 - 자부담전용 결제계좌 사전 미제출 - 보조사업에 따른 자부담전용 결제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회비통장 등 2개의 통장과 혼용하여 자부담 정산 명확하지 않음	
	***** *****	○ 보조금 교부에 따른 자부담 확보 여부 미확인 - 사업기간 : 연중 / 자부담액 분할 입금 - 자부담액 입금(2016.05.26.) 620,000원 - 자부담액 입금(2016.06.16.) 450,000원 - 자부담액 입금(2016.08.05.) 650,000원 - 자부담액 입금(2016.10.13.) 210,000원 - 보조금 입금(2016.04.28.) 17,030,000원	
	@@@@@@ @@@@ @@@@@@@@	○ 보조금 교부에 따른 자부담 확보 여부 미확인 - 사업기간 : 연중 - 자부담전용 결제계좌 사전 미제출 - 보조사업에 따른 자부담전용 결제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회비통장 등 3개의 통장과 혼용하여 자부담 정산 명확하지 않음 - 자부담 사용 통장 현황 - 신한(예금주 : △△△△△△△△△△△△△△△△)	

1) ○○○○○○○○, ***** @@@@@@@@@@

부서명	단체명	지적사항	비고
		100-***-80****, 1**-***-5*****, 100-***-8*****	
	□□□□□□□□	○ 보조금 교부에 따른 자부담 확보 여부 미확인 - 사업기간 : 연중 / 자부담금 분할 입금 - 자부담액 입금(2016.04.05.) 1,600,000원 - 자부담액 입금(2016.11.22.) 800,000원 - 보조금 입금(2016.05.13.) 7,415,000원	
	○○○ ○○○○○○○○	○ 보조금 교부에 따른 자부담 확보 여부 미확인 - 자부담전용 결제계좌 사전 미제출하였고 정산보고 시에도 자부담 전용통장 미제출로 자부담 정산 명확하지 않음	
교육지원과	@##@##	○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 확보 여부 미확인 - 사업기간 : 2016. 3월말 ~ 6월 - 자부담액 입금 (2016. 4. 30.) - 보조금 입금 (2016. 4. 14.)	
	▲▲▲▲▲▲ ▲▲▲▲▲▲ ▲▲▲▲	○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 확보 여부 미확인 - 사업기간 : 2016. 4월 ~ 12월 - 자부담액 입금 (2016. 5. 11.) - 보조금 입금 (2016. 4. 14.)	
노인 장애인과	△△△△△△△△ △△△△△△△△	○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 확보 여부 미확인 - 자부담액 입금 (2016. 6 13.) - 보조금 입금 (2016. 4. 11.)	
가정정책과	△△△ ◆◆◆◆◆◆◆◆	○ 보조금 교부에 따른 자부담 확보 여부 미확인 - 사업기간 : 2016. 11월 ~ 12월 - 보조금 입금(2016.3.30.) - 자부담액 입금(2016.12.15.) 일부 미확인 (2,115,000원 중 1,500,000원 입금) - 자부담 정산 내역 부정확	
	★★★★★ ★★★	○ 보조금 교부에 따른 자부담 확보 여부 미확인 - 사업기간 : 2016. 11. 26. - 자부담액 입금내역 확인 불가(통장 거래내역 일부 제출) - 보조금 입금(2016.3.31.) - 자부담 정산 내역 부정확	
	### ###※※※ ○○	○ 보조금 교부에 따른 자부담 확보 여부 미확인 - 사업기간 : 2016. 6월 ~ 10월 - 자부담액 입금(2016.9.1.) / 입금지연 - 보조금 입금(2016.3.31.)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5장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법인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별도의 인센티브카드(포인트 카드 등)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 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신용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그러나, [표]와 같이 *&^#@@!!^^&##@△△△&*&는 행사 물품 구입 시 3건, 1,486점, &*%%!!△△△&*&는 차량유지비로 유류 구입 시 6건, 664점의 구매 금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정당한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용도로 적립하여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회계 관련 규정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물품 구입 시 포인트 개인 적립 현황 (보조금)

부서명	단체명	지출일	지출금액	포인트 적립 현황
총 3건, 1,486점				
총무과	*&^%\$ △△△&*&	2016.08.30	99,400	- 행사물품 구입시 개인포인트 적립(495점)
		2016.08.30	88,320	- 행사물품 구입시 개인포인트 적립(441점)
		2016.08.30	110,500	- 행사물품 구입시 개인포인트 적립(550점)
총 6건 664점				
총무과	&*%%!! △△△&*&	2016.07.16	62,000	- 차량유지비 지출시 개인포인트(^^&@@@)적립(82점)
		2016.07.23	50,000	- 차량유지비 지출시 개인포인트(^^&@@@)적립(66점)
		2016.07.30	50,000	- 차량유지비 지출시 개인포인트(^^&@@@)적립(66점)
		2016.08.03	50,000	- 차량유지비 지출시 개인포인트(^^&@@@)적립(66점)
		2016.08.17	50,000	- 차량유지비 지출시 개인포인트(^^&@@@)적립(67점)
		2016.11.05	50,000	- 차량유지비 지출시 개인포인트(^^&@@@)적립(317점)

5.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소홀

【 총무과, 가정정책과 】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지방보조사업의 정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공사대장 관련 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정산 시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지방보조금 회계관리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시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고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이 기준에서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한다는 의미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

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총무과의 ○○○○○○○○ 등 3개²⁾ 단체에서는 보조사업에 따른 자부담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비통장과 혼용하여 자부담 정산을 명확히 하지 않았으며, 가정정책과의 △△△◆◆◆◆◆◆◆◆ 등 3개³⁾ 단체에서는 보조사업에 따른 자부담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통장 및 사용내역을 일부만 제출하여 자부담금 집행 내역을 정확히 확인 할 수 없었다.
- 이에 대하여 총무과와 가정정책과는 보조금 정산 검사 시 자부담 사업비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또한, [별첨] 부서별(단체별) 지적사항 현황과 같이 일부 단체에서는 자부담 사업비 집행 시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계좌입금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첨부하여야 하나 이를 첨부하지 않았고, 물품 구입 시 상세 거래내역을 첨부하지 않아 집행 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6. 보조금 정산 검사 및 지도감독 소홀 【 총무과, 가정정책과 】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총무과는 2016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 등 9개 단체에 보조금 116,367천원을 지원하였고, 가정정책과는 2016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 등 5개 단체에 보조금 16,634천원을 지원하였다.

2) ○○○○○○○○, *&^#@@!!^^&##@△△△&*&, ◎◎◎◎◎◎◎◎

3) △△△◆◆◆◆◆◆◆◆, ★★★★★★★★★★, ○○□□□□□□◎◎◎◎◎◎◎◎◎◎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지방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을 제시하고 있고, 지방보조금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는 위 기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예규)」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6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5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조례 제2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총무과와 가정정책과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별첨] 부서별(단체별) 지적사항 현황과 같이 보조금 정산검사 및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V

개선사항

분야	현실태	개선사항	관련부서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 사용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전용 통장은 별도 개설해서 사용하고 자부담 전용 통장을 별도 개설하지 않고 자부담을 보조금 전용 통장에 예치하여 1개사업(단체)에 1개의 통장을 사용하거나, - 보조금 전용 통장과 자부담 전용 통장을 별도 개설해서 사용하는 단체도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어 자부담 전용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지 않고 회비 통장을 사용하고 있어 - 자부담금의 예치 및 지방보조 사업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정산이 명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단체)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통장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 회비통장이 아닌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부담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 	공통
보조금 교부에 따른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장계좌번호만 제출하고 자부담금 예치내역은 확인하고 있지 않음. - 조기집행을 제고를 위해 사업시기가 도래하기 전 상반기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고, - 대부분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 사업의 경우 미리 자부담금을 예치하지 못하는 경우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신청 시 통장계좌사본과 함께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다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하에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보조금 신청 시 보조사업시기에 따라 자부담 예산액 확보 시점을 정하고, 향후 자부담액 확보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할 것. 	공통